

<이용대기자 관리 규정 개정(안)>

개정(전)	개정(후)	참고내용
제4조(이용원칙) ① 대기자는 「서울요양원 운영 규정」 제5조의 자격을 갖추어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순으로 이용한다. 다만, 입소시설의 경우에는 <u>성별, 장기요양등급</u> 에 따라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.	① 대기자는 「서울요양원 운영 규정」 제5조의 자격을 갖추어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순으로 이용한다. 다만, 입소시설의 경우에는 <u>성별, 장기요양등급</u> 에 따라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연고자, 기초생활수급권자, 조손가정 등에게 정원의 일정비율을 배정할 수 있다. ④ 제3항 중 일정비율은 정원 20% 이내로 하며 서울요양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	③, ④번 추가 -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입수 규정 반영 -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사항 반영 (2021.11.3. 오양환 기획조사 팀장 서기관)
제6조(이용보류) ① 신청자는 제5조의 이용안내를 받았으나 대기자의 병원입원 등 개인사정으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보류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을 보류한 경우에는 다음 대기자가 우선 이용자격을 갖는다.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보류는 2회까지 가능하며, 1회당 보류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.	③ 제1항에 따른 이용보류는 2회까지 가능하며, 1회당 보류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.	- 이용 보류(기간 포함)에 따른 장기간 입소 대기 해소
제8조(대기자 제외) ① 원장은 대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취소하고 대기자에서 제외한다. 1. 대기자가 사망한 경우 2. 대기자 또는 신청자가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	① 원장은 대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취소하고 대기자에서 제외한다. 1. 대기자가 사망한 경우 2. 대기자 또는 신청자가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 3. 제5조제2항으로 2차례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아 우편, 전자매체(문자통보, e-mail, SNS 등) 등으로 이용안내 통보 후 14일 이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. 다만, 연락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	- 원활한 대기자 관리를 위해 횡수 수정 및 전자매체 통보 추가

3. 제5조제2항으로 3차례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아 우편, 전자매체(문자통보, e-mail, SNS 등) 등으로 이용안내 통보 후 14일 이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. 다만, 연락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	상 연락이 되지 않아 우편, 전자매체(문자통보, e-mail, SNS 등) 등으로 이용안내 통보 후 14일 이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. 다만, 연락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	
제9조(신청자의 의무)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1. 전화번호, 주소 등 신청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	1. 전화번호, 주소, 장기요양등급 등 신청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	- 장기요양등급 추가 - 등급변동 시 정보전달을 통한 대기자 정보 정확성 확보
제10조(대기자 공개) ① 원장은 대기자 명단을 수시로 서울요양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	① 원장은 장기요양등급별 대기자 명단을 수시로 서울요양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	- 대기자 명단을 장기요양등급별로 게시

- 2022.2.1.부로 실시 예정